

##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
----------	-----

제출년월일 : 1999. 12. 9.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개정('98.12.24, 법률제5,624호) 됨에 따라 조례명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칭 및 설치목적 변경 (제1조)
-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명칭을 변경(제2조제2항)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 (제4조제3항)

###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제4조

##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민자유치”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민간투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한다.

제4조중 제1호, 제2호, 제5호중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사업계획 심의”를 “대상사업의 취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b>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구성) ① (생략)</b></p> <p>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 실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p> <p><b>제4조(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li> <li>4. (생략)</li> <li>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b>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b></p> <p><b>제1조(목적)</b> .....<u>민간</u> <u>투자법</u>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 .....</p> <p><b>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u>행정부지사</u> ..... .....</p> <p>③ ..... <u>민간투자</u>.....</p> <p><b>제4조(기능)</b>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민간투자</u> .....</li> <li>2. <u>민간투자</u> .....</li> <li>3. ....<u>대상사업의 지정취소</u></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u>민간투자</u> .....</li> </ol>

## □ 근거법령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위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